

4단계 두뇌한국(BK)21 「쇠퇴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혁신디자인 교육연구단」 사업 운영 세부지침

제정 2021. 04. 12. BK21 규칙 제1호

개정 2021. 08. 23. BK21 규칙 제2호

개정 2021. 12. 28. BK21 규칙 제3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 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쇠퇴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혁신디자인 교육연구단」(이하 ‘건축학과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건축학과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인재 양성사업(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 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분야
2. 교육역량 영역: 창의융합교육을 통한 통섭적 역량을 갖춘 혁신디자인 인력양성
3. 연구역량 영역: 유희공간 및 생활SOC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 강화

제3조 (교육연구단의 구성) ①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은 BK21 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건축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팀)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팀)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연구단(팀)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단(팀)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② 교육연구단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

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교육연구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교육연구단장의 책무)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8인 전원, 참여 대학원생 대표 2인, 협력기관 대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단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및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 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 사업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3.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참여교수의 선정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매 사업 차수 2년마다 연구실적과 사업기여도를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2.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참여교수를 교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참여교수가 지난 1년간 연구실적이 전혀 없거나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참여교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대학원생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수료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호의 기간은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2.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참여대학원생은 4대 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한다. 단,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인 연구장학금 지원을 받는 자를 뜻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의 3순위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1순위 200점, 2순위 100점, 3순위 50점으로 하여, [별표1]의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교육연구단장은 2인을 1순위 지원대학원생으로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다.
4. 지원대학원생은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며, 직전 학기의 학술발표 또는 게재논문 등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시작년도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점수로 선발한다.
5. 동점자 판별은 직전 학기의 연구실적,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복수학위프로그램 참여자, 직전 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6. 직전 학기 성적은 100점 환산점수로 평가하며, 신입생으로서 직전 학기가 학부 또는 석사과정인 경우 해당 과정의 전체 성적의 100점 환산점수로 평가한다.
7.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한액 제한 없음)
 -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이상
 -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

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

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원 이상

[별표1]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기준

구분	평가항목		인정건수	배점	비고
연구실적	국제 논문	국제 권위 해외 주요 학회지	1.5	100 (1건=30점) ※가산점 (SCI/SCIE:60) SCOPUS:45, 국내등재(후 보)논문:30)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SCI/SCIE, SCOPUS, 국제 영문 저널, 일본건축학회	1.2		
	국내 논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포함)	1.0		
		기타 전국규모 학회지	0.8		
	학술 발표	국외 발표	0.8		
국내 발표		0.6			
연구활동	교육연구단 및 비교과 프로그램, 기타 각종 회의 참여 건수, 공모전 및 기타 수상실적		100 (1건=20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지도교수의 추천		200		
총점				400	

※ 참여 인원수에 따른 논문 및 저서 실적 산출기준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70% 적용)

③ 지원대학원생은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프로그램, 각종 연구활동 및 회의에 참여하여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지원대학원생 중 학석사통합 및 석사과정은 연 1회 이상 학술발표대회 참여,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은 연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다.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입학한 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연 1회 이상의 학술발표대회 참여, 2년을 초과한 경우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다. 단, 이에 준하는 수상실적 및 대외활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그 외 의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지원대학원생 의무 지침에 따라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한다.
4.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지원대학원생의 교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실적이 저조하거나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지원대학원생의 휴학, 취업, 기타 교육연구단의 활동 참여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장학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대학원생의 교체가 가능하다.

제9조 (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또는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 교수 (또는 연구교수라 하며,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연구단은 계약교수 1인, 박사후연구원 1인을 초빙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본교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안정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3. 계약 교수 1인은 교육연구단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박사후과정생은 본교 대학 회계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지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
4.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은 신규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교수의 신규임용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200%이상인 자로서,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지침’에 따른다.
3. 계약교수의 재임용은 BK21 관리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소속기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경우로 한다.
4. 계약교수의 재임용은 다음의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1) 수행할 과제의 협약에 의한 연구책임자
 - (2) 임용기간 중 연간 70% 이상의 연구실적물
 - (3) SCI논문 1편(accepted 된 경우도 인정)

③ 교육연구단(팀)에 참여하는 계약교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2.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

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박사후과정생은 교내외 6시간, 계약교수는 교외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5.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교육연구단(팀)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박사후 과정생의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주저자로 SSCI, A&HCI, 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2편 이상 이어야 한다.
 2. 리서치펠로우는 Post-Doc.으로 발령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간강사의 강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박사후과정생은 연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연수 기간 중 타 과제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4. 박사후과정생의 선발 심사 및 선정방안은 본교 박사후연수과정(Post-Doc) 지원사업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해외학자) 교육연구단에 해외학자를 초빙 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2.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3.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4. 해외학자초빙 시 강사료 지급은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사업비 집행은 한국연구재단 및 본교 산학협력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5. 교육연구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산학협력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팀)에 두는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선발 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3.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가.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 나.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 다.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4.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 (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단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연구성과 및 사업 운영 기여도에 따라 **참여교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여교수 성과급은 예산한도 내에서 참여교수 간의 경쟁을 통해 차등 지급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2]에 따라 매년 교육활동(300점)과 연구활동(100점)에 대해 평가하며, 총점 400점에 대해 A등급 2명, B등급 2명, C등급 4명으로 차등 지급한다.
3. 성과급은 연 1회에 한하며, 성과급 지급은 당해연도 성과급 총액에 대하여 A등급 38%(2인*19%), B등급 26%(2인*13%), C등급 36%(4인*9%)로 차등 지급한다. 단, 시작년도는 예산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4. 성과급의 지원 액수는 당해연도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수 1인 연간 총액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5. 성과급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른 성과급의 금액과 해당 등급에 대한 교수의 적정 인원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2] 참여교수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평가기준

(1) 교육활동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교육개발	혁신교육과정 및 혁신수업모델의 개발과 운영	1건당 50점	100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사회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 지역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포럼 운영	1건당 20점	100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1건당 30점		
국제화	해외 인턴십 및 취업프로그램 주관 운영	1건당 30점	100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공동연구, 해외저명학자 초빙 및 특강 주관 운영	1건당 50점		
총점		300		

(2) 연구활동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인정 건수	배점	
이론 및 계획 분야	국제	국제 권위 해외 주요 학회지	1.5	1건=10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SCI/SCIE, SCOPUS, 국제 영문 저널, 일본건축학회	1.2	
	국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포함)	1.0	
		기타 전국규모 학회지	0.8	
	저서	저역서	1.0	
설계 분야	국제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	1.5	
		완공 작품으로서 국제 권위 해외전문지 게재	1.5	
		국제 개인 및 작품전, 국제 권위 해외전문지 게재	1.5	
	국내	국내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	1.5	
		국내 현상설계 공모전 입상	1.2	
		완공 작품으로서 국내 권위 전문지 게재	1.0	
		개인전, 국내 권위 전문지 게재	1.0	
공인된 국내 단체전 및 초대 작가전 출품	0.8			
총점		100		

※ 참여 인원수에 따른 논문 및 저서 실적 산출기준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70% 적용)

②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활동자로서, [별표 3]의 평가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별표 4]의 성과급 지급금액에 부합하는 경우
2.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우수 학생으로 선정된 자
3. 성과급의 지급은 당해연도 교육연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의 재학 기간이 평가 시점보다 먼저 종료하게 될 경우, 참여 학생의 마지막 학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적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단, 신진연구인력이 당해연도에 1인인 경우,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성과급의 금액 및 실적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별표3] 우수 학생 선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인정건수	배점	비고
연구 실적	국제 논문	국제 권위 해외 주요 학회지	1.5	100 (1건=30점) ※가산점 (SCI/SCIE:60) SCOPUS:45, 국내등재(후보)논문:30)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SCI/SCIE, SCOPUS, 국제 영문 저널, 일본건축학회	1.2		
	국내 논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포함)	1.0		
		기타 전국규모 학회지	0.8		
	학술 발표	국외 발표	0.8		
국내 발표		0.6			
연구 활동	교육연구단 및 비교과 프로그램 최다 참여자			100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공모전 등 수상실적 및 운영위원회 추천자 100점			100	
총점				300	

※ 참여 인원수에 따른 논문 및 저서 실적 산출기준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70% 적용)

[별표4] 우수 학생 성과급 지급기준 (참여대학원생 20명 이하의 경우)

등급	점수	금액(만원)
A	200점 이상	150
B	150~199점	100
C	100~149점	50
D	50~99점	30

[별표5] 연구실적 성과급 지급기준

연구실적 구분	건당	금액(만원)
국제논문	1건	200
국내논문	1건	150
수상실적	1건	50

※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자는 우선하여 [별표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팀)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협력지원기준) ① 교육연구단(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합산 점수
2. 교육연구단의 세부 사업에 참여 기여도
3. 그 외의 선발 대상자 기준은 국제협력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② 국제협력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 내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는 학생이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발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생의 연구실적, 해외연수 연구 계획서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외연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3. 지원대상은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으로 한다. 단, 참여교수는 지도학생과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할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국제학술협력 교류행사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에게 지원한다.

③ 국제협력지원대상자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학술대회참가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 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단계 BK21사업의 기준을 따른다.
 - 나.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2. 장기연수경비는 한국연구재단 및 본교 산학협력단의 기준에 따른다.
3.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위해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산은 교육연구단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
4. 그 외 특별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팀)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단장이 선정하는 운영위원 3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연구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
3. 그 밖의 교육연구단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④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 전문가 경비 집행이 가능하다.

⑤ 교육연구단(팀)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BK21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팀)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팀)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

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교육연구단(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팀)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세부사항) 교육연구단(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팀)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팀)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